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10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세무 및 법률정보

-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1.10.14]

◆(개요)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

※혐의심사 등 착수경위 : ①회사의 회계오류 수정, ②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민원·제보, ③감독·검사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반혐의 발견, ④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

◆ 혐의 심사·감리 실적(대상기간: '16년~'21.6월)

①(실적)총 229사에 대하여 혐의 심사·감리 실시(상장 168사, 비상장 61사)

②(지적률)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229사 중 208사 지적)

착수경위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지적률

	오류수정	감독·검사 중언지	심사·감리 중언지	민원·제보	기획심사 등	타기관	계
종결회사	115	42	32	19	12	9	229
지적률	87.0	97.6	90.6	94.7	91.7	100	90.8

③(위법동기)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 민원·제보에 의한 혐의 심사·감리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높고(72.2%), 오류수정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낮은 편(9.0%)

④(위반유형)당기손익·자기자본 왜곡이 있는 중요위반은 지적회사의 82.7% 수준

⑤(조치현황)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등 202사를 조치하고,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과징금 부과금액 총 358억원)

◆(향후 운영방향) ①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②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며, ③단순과실 회계오류 회사는 신속하게 경조치로 종결할 예정

개요

I 개 요

□외감법상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는 '표본' 및 '혐의'로 구분

①(표본)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전반* 또는 중점점검 이슈**에 대해 심사 등 실시

*①분식위험 분석 등을 통한 선정, ②심사·감리 후 경과기간 고려 무작위 추출 등

**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회계이슈 점검대상회사 선정

②(혐의)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여 심사 등 실시

※혐의심사 등 착수경위

①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오류수정, ②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 ③감독·검사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④감리 등의 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⑤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

혐의 심사
감리실적

Ⅱ 혐의 심사·감리 실적(대상기간: '16년~'21.6월)

1. 실시현황

□ 최근 5년간 총 229사에 대하여 혐의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상장회사는 168사*이고 비상장회사는 61사

* 심사·감리 선정 당시 기준(이후 상장폐지된 경우에도 상장회사로 분류)

□ (연도별)新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하였고,

* 오류수정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17년)6사 → ('18년)17사 → ('19년)34사 → ('20년)38사

◦'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연도별 혐의심사·감리 실적

(단위 : 사)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종결 회사수	41	18	29	61	57	23	229
상장회사	22	14	23	50	44	15	168
비상장회사	19	4	6	11	13	8	61

증가

□(착수경위)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사), 민원·제보 접수

혐의심사·감리 착수경위 ('16년~'21년 6월)

(단위 : 사, %)

착수경위	오류수정	감독·검사 중 인지	심사·감리 중 인지	민원·제보	기획심사 등	타기관	계
종결회사수	115	42	32	19	12	9	229
비중	50.2	18.4	14.0	8.3	5.2	3.9	100

8.3%(19사) 順

2. 지적률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229사 중 208사를 지적)

혐의심사·감리 결과 연도별 지적현황

(단위 : %, 사)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지적률	90.2	83.3	93.1	82.0 ^{주)}	98.2	100	90.8
종결 회사	41	18	29	61	57	23	229
지적 회사	37	15	27	50	56	23	208

주) '19년은 완화된 조치양정기준 적용(연결특례 적용 등)으로 무혐의 종결 건이 증가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임

◦ 재무제표 수정회사의 경우 수정사항이 오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적하지 않아 지적률이 87% 수준

착수경위별 지적률 ('16년~'21년 6월)

(단위 : %, 사)

착수경위 지적률	오류 수정	감독·검사 업무 중 인지	심사·감리 중 인지	민원· 신고	기획 심사 등	타기관	계
지적률	87.0	97.6	90.6	94.7	91.7	100	90.8
종결 회사	115	42	32	19	12	9	229
지적 회사	100	41	29	18	11	9	208

위반 내역 분석

3. 위반내역 분석

가. 위법동기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 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 사(21.1%), 중과실 59 사(28.4%), 과실 105 사(50.5%)

◦ '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짐

혐의심사·감리 결과 지적회사의 위법동기

(단위 : 사, %)

연도 위법동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고 의	9	4	6	6	11	8	44 (21.1)
중 과 실	17	10	11	12	3	6	59
비 중	45.9	66.7	40.7	24.0	5.4	26.9	(28.4)
과 실	11	1	10	32	42	9	105
비 중	29.7	6.7	37.0	64.0	75.0	39.1	(50.5)
계	37	15	27	50	56	23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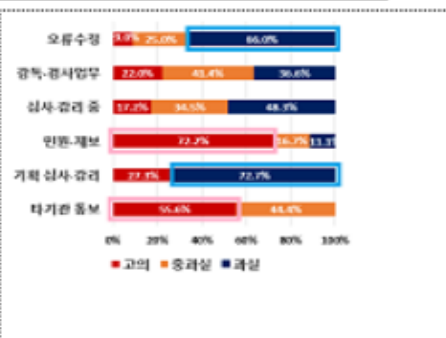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은 편임

* 제약바이오 회사의 개발비 관련 위반에 대한 제도조치에 기인

혐의심사·감리 실시경위별 지적회사의 위법동기 ('16년~'21년 6월)

(단위 : 사)

	고의	중과실	과실	계
오류수정	9	25	66	100
감독·검사업무	9	17	15	41
심사·감리 중	5	10	14	29
민원·제보	13	3	2	18
기획심사·감리	3	-	8	11
타기관 통보	5	4	-	9
계	44	59	105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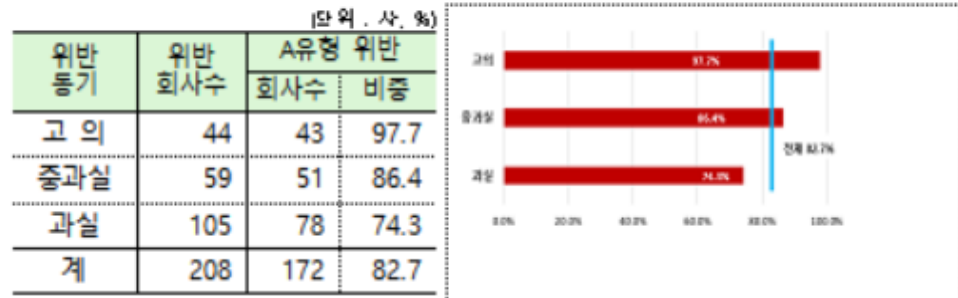


나. 위반유형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하 'A 유형 위반') 회사는 208 사 중 172 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

◦A 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 사 중 43 사)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 사 중 78 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위반동기별 A유형 비중 ('16년~'21년 6월)



□208 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 건으로 회사당 평균 1.9 건을 기록

◦A 유형의 지적이 289 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

- A 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順

※기타유형 :유동·비유동부채분류오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자산 사용제한·차입약정 등 주석 누락

조치 사항

4. 조치 현황

□최근 5 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 사 중 202 사*를 조치하고, 이 중 134 사**의 감사인을 조치

*(非조치 6 사) 他조치회사와 흡수합병, 과거 위법행위와 합산조치, 과실 감경 등

** (감사인 非조치 74 사) 재무제표 심사 후 종결, 분·반기보고서 위반 또는 위반회사가 외국법인 등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 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56 사

* 심사·감리 선정 당시 기준

혐의 심사·감리 결과 연도별 회사·감사인 조치현황

(단위 : 사)

실 적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지적 회사수	37	15	27	50	56	
조치 회사수	34	14	27	48 (10)	56 (33)	23 (6)	202 (49)	
조치 감사인	34	14	21	32	19	14	134	

* 재무제표 심사 결과 감조치 종결 회사수

시사점 및 향후
제도 운영방향

□ (회사)63 사에 대해 총 332.9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13 사에 대해 총 4.4 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회사 35 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으며, 45 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회사 포함

□ (감사인·공인회계사) 134 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 사 및 공인회계사 338 명을 조치

◦감사인 조치 중 4 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 사(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 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2 억원 부과

Ⅲ시사점 및 향후 제도 운영방향

1. 회계부정정보 활성화 노력 지속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17.11 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 억원→10 억원)하였고, '20.5 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20.3 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의 경우 감리 가능)

□ 회계부정정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 회계부정 신고사항에 대한 감리 실시로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가 증가*

* 민원·제보 관련 지적한 회사 중 고의 지적비율은 72.2%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

2. 타기관·타부서와의 정보공유 강화

□ 검찰 등 타기관 및 감독기관 내의 감독·검사부서에서 통보한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적률*이 높고

* (지적률)타기관 통보 100%, 감독·검사업무 과정 중 발견 혐의 97.6%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적발 기여도*가 높은 편임

* 타기관 통보의 경우 100%, 감독·검사업무 중 발견의 경우 63.4%를 고의·중과실 위반으로 조치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

3. 단순과실에 기인한 오류 수정회사에 대해 신속한 경조치 종결

□ 최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영향으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수정 등 회계오류 수정회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오류수정회사와 관련한 **심사·감리 실적도 증가***

* ('17년)6사 → ('18년)17사 → ('19년)34사 → ('20년)38사

□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의 경우, **과실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비중이 **높음**
편임(지적회사의 66% 수준)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

* 경영진의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 후 엄정하게 조치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세무 및 법률정보 등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 주요내용입니다

- '21.10.8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 13 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 개국 중 136 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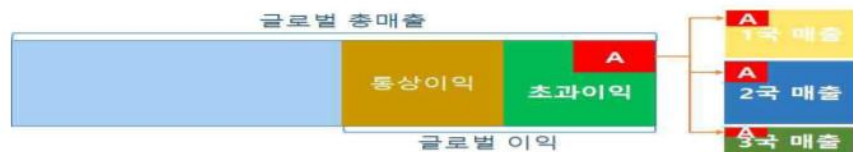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참여하지 않은 4개국 :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25%) 및 필라2 최저한세율(15%) 등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

[기본 개념]

- (개요) 일정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 (과세이익 결정) "①이익률 기준→②배분율→③배분지표"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개별 시장소재국(과세연계점)에 배분될 과세이익 결정·배분

- * ① 초과이익 = 과세표준 × (세전이익률 - 통상이익률(10%))
- * ② 전체 시장소재국 배분대상 과세소득 = 초과이익 × 배분율 25%
- * ③ 개별 시장소재국 배분 과세소득 = 전체 배분대상 과세소득 × 배분지표

1.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Pillar 1]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 억유로 (27 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 *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
-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 만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 가 400 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 만유로 이상)
 - *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 **(매출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 사용 허용)
-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은 **회계기반**으로 결정, 손실은 **이월**
- **(구분회계)** 구분회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함
-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이미 납세하고 있는 경우 세이프하버 규칙을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Amount A)를 제한(cap)**함
-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 **(분쟁해결 절차)** Amount A 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됨**
 - 분쟁대응역량이 낮은(BEPS action 14상 유예 판정을 받고, 상호합의 건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개도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고, **주기적 재심사** 진행
- **(Amount B*) '22년 말까지 논의 예정**
 - *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관한 정상가격원칙의 단순화·일원화 작업
- **(집행)** 다국적기업 내 **하나의 법인이 필라 1 관련 절차 일괄수행**
-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 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21.10.8 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 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12.31 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 예정
- **(시행)** 관련 다자협정에 **'22년 서명한 후, '23년 발효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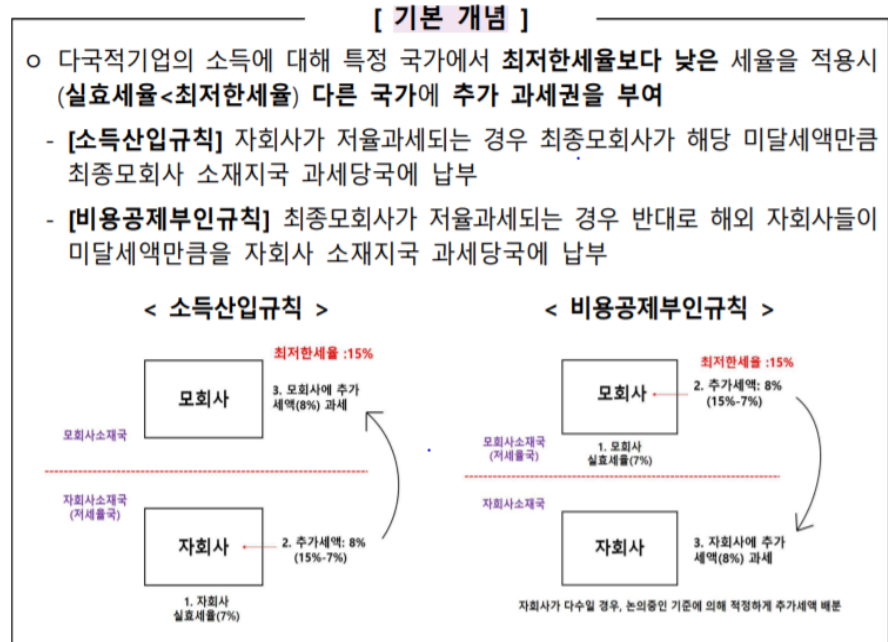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Pillar 2]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 억유로(1 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 *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 제외**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 **(비용공제부인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며, 이러한 제외는 **5년 간** 적용**

* ①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②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

** ①해당 다국적기업이 필라2 대상 범위에 처음 포함된 이후 5년 간
②이미 필라2 대상 범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이라면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된 시점부터 5년 간



-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필라 2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필라2 과세표준 - 실질기반 적용제외)
- (최저한세율) 15%
-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및 급여비용)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필라 2 과세표준에서 공제
*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
- (최소기준 적용제외) 한 관할국에서 ①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및 ②이익 1백만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관할국에서 적용제외
- (국제해운업 제외)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소득을 필라 2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
- ** 통세 제도를 적용 받는 해운회사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 2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소
- *** 적용제외대상인 국제해운소득의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을 준용

□ (원천지국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9%

□ (지위)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 ① 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할 의무, ② 다른 국가가 필라2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

□ (단순화) 과도한 이행·집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검토

□ (이행) '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3년부터 시행 목표

○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4년부터 시행 (→ 1년 유예)

3. 향후 일정

□ 금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10.13, 워싱턴 D.C.)에 보고될 예정(홍남기 부총리 참석)이며, 이후 **G20 정상회의**(10.30-31, 로마)에서 **추인**될 예정

○ G20에서 원만히 채택된다면 해당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①**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②**모델규정**으로 구현될 예정

○ 그간 논의하지 못한 **기술적 세부사항**도 동시에 논의되어 다자협정·모델규정에 반영될 계획

□ '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22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계획

○ 필라1은 '22년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 마련 → '22년 중 각국 서명·비준 및 국내 법제화 완료 → '23년 발효

*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과 일치하게 내국세법을 개정할 의무

○ 필라2는 올해 11월 중 모델규정 마련 → '23년 중 국내 법제화 → '23년 시행

○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OECD IF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

-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 제 1 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2021.09.29)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로 '20 과세연도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바,

- '2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신청하고자 함.

(질의내용)

○ 고용유지지원금이 조특법§7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2021.09.29)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섬유원단을 염색하여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였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A법인은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생산한 원단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거래처에 납품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 A법인의 일부 직원들은 A법인과 B법인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 AAA는 A법인 및 B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대표이사 AAA는 A법인 설립 시 A법인 운영의 독립성확보에 대한 조항, A법인 경영재무위험에 대한 B법인의 책임해제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B법인의 대주주* 등에 제공하였음.
 - * B법인의 주주현황 : BBB(AAA의 부친) 60%, CCC(AAA의 모친) 20%, AAA(B법인의 대표이사) 20%
- 현재 A법인은 신사업진출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건축을 진행중이고, 국내 쇼핑몰 진출을 위해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아마존' 고객으로 등록하였음.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